

평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7. 8.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군내 거주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주외국인의 지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외국인, 한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 단, 불법체류자 등은 제외

다.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 한국어 등 적응교육 및 생활·취업 상담
-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라.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7조 내지 제11조)

- 위원장 : 부군수
- 위원 :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
- 의결 :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마. 외국인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내지 제17조)

- 외국인 지원 민간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 “세계인의 날” 운영 : 매년 5월 20일
- 다문화주간 운영 : 세계인의 날을 전후하여 1주간
(문화·예술·체육행사 실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실시(2007. 6. 11 ~ 7. 2) 결과, 제출의견 없음

평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의 책무) ①군수는 거주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지원의 범위) ①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군수는 제1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자문위원회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군수는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평창군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교육청 및 경찰서의 실무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 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및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군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 ①군수는 거주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평창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을 전후하여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군수는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군수는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

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에 대한 표창)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군 행정 및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평창군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명예군민) ①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